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61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조승래・박용갑・강준현

김용만 • 이정문 • 정준호

한준호 • 이해민 • 진선미

박홍배 • 김교흥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·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.

그런데 최근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,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,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 도록 하여,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 임(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5항제1호"를 "제7항제1호"로 한다.

- ⑤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배우자가 없을 경우 안장된 사람의 부모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(부모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부모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합장과 관련하여, 생부 또는 생모 외에 안장된 사람을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안장된 사람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.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5조제5항제5호"를 "제5조제7항제5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의2 중

"제5조제7항"을 "제5조제9항"으로 한다.

2의2. 제5조제6항에 따른 부모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중 "제5조제5항제1호"를 "제5조제7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5조제5항제5호"를 "제5조제7항제5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5조제5항제1호"를 "제5조제7항제1호"로 한다. 제12조제3항 중 "제5조제3항 및 제4항"을 "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"로. "배우자"를 "배우자 또는 부모"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배우자"를 각각 "배우자 또는 부모"로 한다.
제14조의2제2항 중 "배우자"를 각각 "배우자 또는 부모"로 한다.
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"제5조제5항"을 "제5조제7항"으로 하고, 같은
조 제2항제1호 중 "제5조제5항제2호"를 "제5조제7항제2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제5조제5항제5호"를 "제5조제7항제5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부모 합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, 제12조,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	대상자)	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
① ~ ④ (생 략)	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⑤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
		안장된 사람이 제3항에 따른
		배우자가 없을 경우 안장된 사
		람의 부모는 본인이나 유족의
		희망에 따라 합장(부모의 유골
		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
		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
		경우를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		다만,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
		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부
		모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
		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
		<u>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	⑥ 제5항에 따른 합장과 관련
		하여, 생부 또는 생모 외에 안
		장된 사람을 양육하거나 부양
		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
		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안장된
		사람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
		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
		본다.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

<u>⑤</u>·<u>⑥</u> (생 략)

① 제5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・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.

제10조(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・2. (생략)

3.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. 제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. ~ 6. (생략) ② ~ ⑥ (생략) 제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생략)

따른 안상대상심의위원회의 결
정에 따른다.
<u>⑦·⑧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
과 같음)
<u> </u>
<u>.</u>
· 세10조(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
치 등) ①
^ 6) Û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5조제6항에 따른 부모
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
3. <u>제5조제7항제5호</u>
3의2. <u>제5조제9항</u>
3의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세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과
같음)

2	저	13	창에	도	불	구	하고	7	사	후
(死	後)	ス	에5조	스제	1항	· Z	} ;	ट्रे०	1	따
라	국	립.	묘지	인	장	대	상:	자기	' }	되
는	사	·람	으로	본서	じ	- 음	Z	}	호	의
요?	건을		모두	깆	춘	사	람.	슨	본	인
0]	국	립.	묘지	의	안.	장	대	상이	4]	해
당	하는	-지	에	관	한	결	정듺	<u>)</u>	해	줄
것-	을	생	전(설	生前	j)에	=	국フ	보	훈	부
장	관이	계	신	청합	할 -	수	있다	7.		
1.	(생	i	략)							
2.	다	<mark>아</mark>	각	목	의	어	느	하	나	에
			_							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가. (생 략)
 - 나. <u>제5조제5항제1호</u> · 제3호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
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

②
1. (현행과 같음)
2
가. (현행과 같음)
,
나. <u>제5조제7항제1호</u>
나. <u>제5조제7항제1호</u>
나. <u>제5조제7항제1호</u>
3
3
- 3 - <u>제5조제7항제5호</u>
- 3 - <u>제5조제7항제5호</u>
- 3 - <u>제5조제7항제5호</u>
- 3 - <u>제5조제7항제5호</u>

- 이후 <u>제5조제5항제1호</u>·제3호 ·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
- 제12조(묘의 면적 등) ①·② (생략)
 -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.
 - ④ (생략)
- 제14조(봉안시설의 설치・운영)
 - ① (생 략)
 -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 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, 그 배우 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.
- ③ (생 략) 제14조의2(자연장지의 설치·운

<u>제5조제7항제1호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묘의 면적 등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-
<u>배우자 또는 부모</u>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봉안시설의 설치・운영)
① (현행과 같음)
②
또는 부모
<u>배우자 또는</u> 부모
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2(자연장지의 설치・운

영) ① (생 략)

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 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, 그 <u>배우</u> <u>자</u>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.

③ (생략)

제21조의2(자료 등의 제출 요청)

-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(육군·해군·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),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, 주민등록정보,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, 분역 정보 등을 요청할수있다.
 - 1. <u>제5조제5항</u>에 따른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
- 2. (생략)
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

0) (1) (11 6-1) (11
②
배우자
<u> </u>
<u>배우자 또는 부모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2(자료 등의 제출 요청)
①
1. <u>제5조제7항</u>
2. (현행과 같음)
②

여) ① (청채고 가으)

호의	심사	또는	조사	를 위	하여
관계	기관	의 장	에게	범죄	경력
자료어	내 대	한 조	회 요	요청을	· 할
수 있	다.				

- 1. 제5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
- 2. <u>제5조제5항제5호</u>에 따른 국 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
- ③・④ (생 략)

1. 제5조제7항제2호
2. 제5조제7항제5호
③・④ (현행과 같음)